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6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진선미 · 박상혁
김한규 · 김동아 · 문정복
한민수 · 김문수 · 박정현
이인영 · 문대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
· 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
고,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
·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
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한정된 세관 인력만으로 공항 출입국 경로를 전반적으로 감
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, 업무를
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
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
사·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
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

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65조의3 신설).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5조의3(생체정보의 처리)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·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(이하 “생체정보”라 한다)를 수집할 수 있다.

1. 마약류등

2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 및 석궁

3. 그 밖에 국가안보,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

법」에 따라 처리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체정보의 구체적인 범위, 수집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65조의3(생체정보의 처리) ①</u> <u>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</u> <u>제265조에 따른 검사·검색 업</u> <u>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</u> <u>경우에는 얼굴 등 개인을 식별</u> <u>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</u> <u>한 개인정보(이하 “생체정보”라</u> <u>한다)를 수집할 수 있다.</u> <u>1. 마약류등</u> <u>2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</u> <u>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</u> <u>른 총포·도검· 화약류·분</u> <u>사기·전자충격기 및 석궁</u> <u>3. 그 밖에 국가안보, 사회안전</u> <u>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</u> <u>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하는 물품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</u> <u>하기 위하여 생체정보가 필요</u> <u>한 경우 관세청장은 관계 행정</u> <u>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</u> <u>할 수 있으며, 관계 행정기관은</u>

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처리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체정보의 구체적인 범위, 수집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.